

고교-대학 학점 인정 과목 운영 지침

제정 2026. 02. 2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31조의7에 따라 고등학생이 고교-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고교-대학 학점 인정 과목” (이하 “과목” 이라 한다)이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아니한 고교-대학 연계 교육과정으로서, 시·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영된 과목을 말한다.
2. “고교생” 이란 제1호의 과목을 이수한 고등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이수 기준 및 평가) ① 과목 이수는 과목별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.

② 평가는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P(Pass)로, 충족하지 못한 경우 F(Fall)로 부여한다.

제4조(이수증 발급) 과목 성적이 P(Pass)인 경우에는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한다.

제5조(학점 인정) ① 본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고교-대학 학점 인정 학점은 최대 4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고교-대학 학점 인정은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, 학점만을 인정한다.

③ 인정된 학점의 표기는 ‘일반선택’ 으로 분류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제6조(학적부 표기) 학적부에는 고교-대학 학점 인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고교-대학 인정 학점	
일반선택	00학점
계	00학점

제7조(학점 인정 신청 절차) ① 학점 인정 신청 대상자는 과목을 이수한 후 본교 학부 과정에 입학한 자로 한다.

②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에 [별지 제2호 서식]의 학점 인정 신청서와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점 인정은 입학 연도 1학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입학 전 5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만 인정한다.

제8조(기타)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교육기획팀-160, 2025.02.25.)

이 지침은 202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발급번호 : 제 상지대-학년도-0학기-000호

고교-대학 학점 인정 과목 이수증

운 영 대 학 : 상지대학교

과 목 명 : ○○○○

교 과 (군) : 국어/사회/기술 · 가정/교양 등

과 목 유 형 : 일반선택/진로선택/융합선택

학 점 : 0학점

운 영 학 기 : 0000학년도 0학기

소 속 학 교 : ○○고등학교

성 명 : ○ ○ ○

학 번 : 0학년 00반 00번

생 년 월 일 : 0000. 00. 00.

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상 지 대 학 교 총 장

※ ‘교과(군)’, ‘과목유형’은 고교 교육과정이며, 본교는 「고교-대학 인정 학점 _ 일반선택」으로 분류하고 최대 4학점 이내 졸업학점에 포함함.

고교-대학 학점 인정 신청서

학과(전공)		학 번	
성 명		생년월일	
출신 고교명		연 락 처	
과목 이수 내역			
과목명	학점	이수증 발급일	본교 인정 학점
인정 학점 합계			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『고교-대학 학점 인정 과목』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이에 신청합니다. 20 . . . 신청인 : (서명) ※ 첨부자료 : 이수과목별 이수증 각 1부. 끝.			
※ 유의사항 1. 입학 연도 1학기 종료 전에 학사지원팀으로 당 서식과 이수증을 함께 제출함 2. ‘학점’ 란은 이수강좌 신청 시 강좌별 인정 학점을 기재함 3. 여러 강좌를 이수한 경우, 이수강좌를 모두 기재하고 강좌별로 이수증을 첨부함 4. 이수학점은 최대 4학점 이내 인정되며, 교과목 이수가 아닌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			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